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3·6·9 정기예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, 조문 삭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『3·6·9 정기예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p> <p>제 1 조 약관의 적용 3·6·9 정기예금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, 거치식예금 약관(구 하나은행)</u>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 2 조 예금과목 (생략)</p> <p>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</u>으로 합니다.</p> <p>제 4 조 ~ 제 8 조 (생략)</p> <p>제 9 조 기타 <u>위 특약 사항은 변경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.</u></p>	<p>『3·6·9 정기예금』 특약</p> <p>제 1 조 적용범위 “3·6·9 정기예금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거치식예금 약관』</u>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 2 조 예금과목 (좌동)</p> <p>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</u>로 합니다.</p> <p>제 4 조 ~ 제 8 조 (좌동)</p> <p><u>(삭제)</u></p>	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 <p>가입대상 추가</p> <p>조문 삭제 (내용 중복)</p>